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. 2. 15 선고 2022가단42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병길

변 론 종 결 2022. 12. 13.

판 결 선 고 2023. 2. 15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경주시 D 전 54㎡ 중 별지2 도면 표시 2, 3, 9,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㎡에 관하여, 피고 B은 1/2 지분, 피고 C은 1/2 지분에 관하여,

나. 피고 B은 경주시 E 전 37㎡ 중 별지2 도면 표시 3, 4, 5, 9,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7㎡에 관하여, 각 2022. 3. 10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3/4은 원고가, 나머지 1/4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

1. 경주시 D 전 54㎡ 중 별지1 도면 표시 1, 2, 10, 9, 8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3㎡에 관하여, 피고 B은 1/21) 지분, 피고 C은 1/2 지분에 관하여, 2. 피고 B은 경주시 E 전 37㎡ 중 별지1 도면 표시 2, 3, 4, 11, 10,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5㎡에 관하여2),
각 2022. 3. 10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20나30355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, 2021. 1. 13. ‘원고가 1987. 12. 21.부터 20년간 경주시 F 대 398㎡(이하 ‘F 토지’로만 표시하고, 이하 다른 토지들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)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’는 이유로 ‘대한민국은 원고에게 F 토지에 관하여 2007. 12. 21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’는 판결이 선고되었고, 대한민국이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.

원고는 2021. 5. 26. 위 확정판결에 따라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한편, 원고는 F 토지에 인접한 G 대 96㎡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가단1066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였고, 위 사건에서 ‘대한민국은 원고에게 G 토지에 관하여 2007. 12. 21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’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21. 12. 3. 확정되었다.

원고는 2021. 12. 7.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G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원고 소유인 F, G 각 토지에 인접한 토지로 D 전 54㎡ 및 E 전 37㎡가 있는데, D 토지에 관하여는

피고들이 1997. 2. 27. 증여를 원인으로 각 1/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E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B이 1997. 2. 27.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, 7, 8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. 이하 같다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1987. 12. 21. 분할 전 F 토지(1991. 10. 2. F, G 토지로 분할되었다)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서, 위 매수 토지에 인접한 D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, 2, 10, 9, 8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3㎡(이하 ‘별지1 도면 ㄱ부분 토지’라고 한다) 및 E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, 3, 4, 11, 10,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5㎡(이하 ‘별지1 도면 ㄷ부분 토지’라고 한다)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22. 3. 10.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나. 피고들 주장의 요지

D, E 각 토지는 피고들이 텃밭으로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다. 가사 원고가 피고들 소유인 위 각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에 관한 점유권원 없이 점유하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므로, 원고는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.

3. 판단

가. 원고가 D, E 각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먼저, 원고는 별지1 도면 ㄱ부분, ㄷ부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, 갑 제13 내지 22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다만, 위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

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소유하는 F, G 토지와 피고들이 소유하는 D, E 토지 사이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, 원고는 피고들이 부(父) H로부터 D, E 토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그 담장 안쪽 부분인 D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, 3, 9,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㎡(이하 ‘별지2 도면 ㄱ부분 토지’라고 한다) 및 E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3, 4, 5, 9,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7㎡(이하 ‘별지2 도면 ㄷ부분 토지’라고 한다)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별지2 도면 ㄱ부분, ㄷ부분 각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고, 달리 위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트릴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그렇다면, 원고는 피고들이 D, E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년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지정한 2022. 3. 10. 위 별지2 도면 ㄱ부분, ㄷ부분 각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다.

나. 따라서 원고에게, ① D 토지 중 별지2 도면 ㄱ부분 토지에 관하여, 피고 B은 1/2 지분, 피고 C은 1/2 지분에 관하여, ② 피고 B은 E 토지 중 별지2 도면 ㄷ부분 토지에 관하여, 각 2022. 3. 10.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,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김대규

별지

1) 원고는 2022. 10. 13.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지분을 각 11.5/54 지분으로 표시하였으나, 원고의 청구원인 내용은 D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, 2, 10, 9, 8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3㎡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인데, 위와 같은 지분 표시는 D 토지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이전을 구하는 면적 비율을 표시한 것으로 위 지분 표시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, 이를

청구원인 내용에 부합하게 D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지분을 표시한 것으로 본다.

2) 원고는 2022. 10. 13.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지분을 15/37 지분으로 표시하였으나, 위 1)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는 착오로 인한 기재로 보이므로, 청구원인 내용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정정한 것으로 본다.